심판위원회 규정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 회원단체 심판위원회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회원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단체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우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과 회원단체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체육회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 5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7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8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

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구분) 종목단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

1. 국제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2.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기타

제15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 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규정 제37조에 따른다.

제16조(정보 제공)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심판양성교육(심판강습회 및 심판연수회)

제17조(심판강습회 및 연수회 운영) ①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심판강습회 및 연수회 운영은 본 협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은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본 협회 심판의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본 협회 주관 교육은 심판강습회와 심판연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 과정의 교육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강습교육은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 또는 심판활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2. 심판연수교육은 심판강습교육을 이수한 자 및 심판 자격증을 소지한 심판 중 유형별로 전문 강의 및 토론 중심의 교육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3. 강사 구성은 심판관련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⑤ 심판강습회 및 연수회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본 협회의 심판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본 협회는 심판교육연수 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8조(강습회 및 연수회 이수) ① 강습회 이수자는 공인심판자격검증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소정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 해당 심판원의 등급 자격을 부여된다.

② 신규로 심판자격증을 획득한 심판원은 만 1년 이내에 본 협회 및 시도협회, 전국연맹체 주최, 주관 대회에 심판활동을 하여야 심판자격이 유지되며 만 1년 이내에 심판활동이 없는 경우 자격은 한 단계씩 강등이 된다.

③ 심판자격증 2년 이상 경력자는 2년 이내 국내대회에 1회 이상 심판을 보지 않을 경우 등급하향이 아닌 심판자격 자체가 자동 취소가 된다. 심판원의 자격이 박탈된 심판원은 자격이 박탈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으며 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최하위등급(3급 심판)에 응시할 수 있다.

④ 매년 연말 본 협회 주최 심판강습회 겸 연수회에 참가를 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중 한번은 연말 심판강습회 겸 연수회 교육을 받아야 심판 자격이 갱신이 된다.

⑤ 심판강습회 및 연수회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19조(심판평가) ① 본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상임심판, 본 협회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는 우리 종목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0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본 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심판배정) ① 본 협회는 본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본 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1.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2.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3.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제22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본 협회의 대회요강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지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비디오 재판독 진행 경우에 한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국제연맹 및 본 협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본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회원종목단체규정', 본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4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본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5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본 협회 및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심판매뉴얼) 본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국제심판 자격규정

제27조 ISTF(국제연맹)에서 시행하는 심판 자격 취득 절차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28조 국제심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국내 1급 심판의 자격을 인 정한다.

제29조 국제심판의 자격을 상실해도 본 위원회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에는 1급 심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장 1급 심판 자격규정

제30조(응시 자격) 소프트테니스와 관련한 제반 상식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풍부한 심판 경험과 함께 정확한 판단력과 공정한 자세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2급 소지자 중에서 소정의 1급 시험을 통과한 심판원 중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자격심사를 통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제31조(등급하향) 1급 심판은 국, 내외 대회에서 연간 5게임 이상의 심판(주심)을 보아야

한다. 연간 5게임 이상 심판을 보지 않을 경우 자동 2급으로 하향된다.

제32조(레프리 임명) 1급 심판은 국내대회에서 레퍼리로 임명될 수 있다.

제33조(자격 격하) 1급 심판으로서 경기 중에 오심 또는 편파판정 등으로 연간 2회 이상 서면으로 제소를 받게 될 경우 위원회에서 제소가 이유 있다고 판정이 되면 익 년도에는 2급 심판으로 그 자격이 격하된다.

제9장 2급 심판 자격규정

제34조(응시자격 1) 소프트테니스 선수 경력 만 6년 이상으로 정구와 관련한 제반 상식을 갖춘 풍부한 경험과 함께 심판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소정의 2급 시험을 통과한 자에 그 자격을 부여한다. 단, 소프트테니스선수 경력은 선수등록 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35조(응시자격 2) 3급 심판으로 3년 이상 의무규정을 준수한 사람 가운데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등급조정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급 심판이 될 수 있다.

제36조(의무사항) 2급 심판은 연간 10게임 이상의 심판을 보아야 하되 연간 10게임 이상 심판을 보지 않을 경우 자동 3급으로 하향된다.

제37조(자격격하) 2급 심판으로 경기 중에 오심 또는 편파판정 등의 이유로 연간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소를 당하고 위원회에서 제소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익 년도에는 3급 심판으로 자격이 격하된다.

제10장 3급 심판 자격규정

제38조(응시자격 1) 선수경력에 상관없이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소프트테니스에 관한 제반 상식 및 심판규정을 숙지하고 있음은 물론 공정성과 정확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3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9조(응시자격 2) 만3년 이상의 선수 경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심판 강습회를 이수할 경우 3급 심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소프트테니스 선수 경력은 선수등록 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40조(응시자격 3) 만3년 이상의 현행 등록 선수에 한하여 3급 심판의 자격이 부여된다. 단, 해당 년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3급 심판 자격이 상실된다.

제41조(자격취소) 심판은 연간 10게임 이상의 심판을 보아야 한다. 10게임 이상 심판을 보지 않을 경우 자동 심판자격이 취소된다. 단, 현행 등록 선수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자격 상실) 3급 심판으로 경기 중 오심 또는 편파판정 등으로 연간 3회 이상 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소를 당하면 3년간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며 2회 이상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경우 심판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장 영상 판독

제43조(영상 판독) ① 심판 영상판독기 사용 시, 해당 경기는 한 매치 당 팀 상호 각 2회씩 심판 영상판독 요청 가능하다.

② 심판 영상판독 결과는 최종 결정이며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③ 심판판독이 불가능할 시에는 해당 심판과 대회본부와의 협의를 통한 판정이 최종 판정으로 한다.

④ 심판판독의 책임은 심판부, 관리는 사무처, 운영은 심판부, 사무처 및 상임심판이 진행한다.

제12장 수당지급

제44조 (수당)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판활동에 의하여는 심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45조 심판원에게 지급되는 제반 수당은 다음과 같으며 심판 행위 회수와 업무과중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될 수도 있다.

가. 일반 국내대회: 1급 단체전 1회 당 3만원, 2급 1회 당 2만5천원
1급, 2급 개인전 1회 당 1만5천원 이내로 지급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

나. 전국소년,체육대회:체육대회 공인심판으로 차출된 경우,실재 심판행위일 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1급 1일당 10만원 이내, 2급 1일당 9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다. 국제대회: 국제대회 해당 개최국 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의 정해진 수당지급 지급에 의한다. 다만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경우 1일당 1급 단체전 12만원, 2급 10만원, 1급, 2급 개인전 1일당 6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라. 상기 나항의 심판비 지급 시, 관련 세금을 제하고 지급한다.

제13장 부칙

제1조 심판원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 위원이나 레퍼리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조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받은 심판자격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14장 부칙

1.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운영 사항은 본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개정하여 진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사무처에 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제5조 4항, 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통합회장 선임 이후에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심판자격 관리 및 운영규정) 민간자격검정 시험으로 공인심판자격증 시험에 대한 규정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